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10. 13 선고 2023가단1362 판결 [보증채무금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피 고 B (개명 전 C)

변 론 종 결 2023. 9. 8.

판 결 선 고 2023. 10.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확정판결

원고는 2012. 2.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가단2819호로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42,000,000원, D의 원고에 대한 보증채무금 23,000,000원 합계 65,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송(이하 ‘선행 이행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재판부는 2012. 4. 26.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2. 5. 11. 확정되었다.

(2) 피고의 소송

피고는 2021. 6.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가단3135호로 원고를 상대로 선행 이행소송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소송(이하 ‘2021년 청구이의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재판부는 2022. 11. 25.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22. 12. 15. 확정되었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확정된 선행 이행소송 판결금채무자인 피고는 채권자인 원고에게 판결금인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 리

민법 제165조 제1항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고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통상적으로는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리키지만, 이와 반대로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應訴)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포함되고, 이러한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피고가 현실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응소한 때에 발생한다. 응소행위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그것이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에 다름 아닐 뿐만 아니라 계속된 사실 상태와는 조화될 수 없는 다른 사정이 발생한 때로 보아야 한다는 것에 기인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반드시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이거나 당해 소송이 아닌 전 소송 또는 다른 소송에서 그와 같은 권리주장을 한 경우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9다23998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위 확정된 판결금채권이 이미 시효(時效)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선행 이행소송 판결이 2012. 5. 11.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23. 4. 3.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나, 한편,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1년 청구이의소송에 대하여 소멸시효기간 만료(2022. 5. 11.) 전인 2021. 10. 12. 및 2022. 5. 3. 해당 재판부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확정된 선행 이행소송 판결금채무의 존재를 주장하여 피고의 청구가 기각되는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확정된 선행 이행소송 판결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2021년 청구이의소송에서 한 원고의 응소로써 중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중호